

의안 번호	제 40 호
의결년월일	1998. 11. 26 (제 79 회)

의 결 사 항
원안가결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보 은 군 수
제 출 년 월 일	1998. 11. 24

기획감사실장 심사필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40

제출년월일: 1998.11. 24

제 출 자: 보은군수

1. 제안이유

- 상위법 제정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 보은군 직제개편(보은군조례 제1548호)에 따른 관련조문 정비

2. 주요골자

- 제1조(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 제9조 제1호중 “6월이상”을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②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 제2조(보은군사무위임조례)

제2조 제1항중 “별표1(권한위임사무)”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제2항중 “별표2(온라인민원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 제3조(보은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

제3조 제3항중 “부읍면장, 총무계장, 새마을계장, 산업계장, 사회계장”을 “총무담당주사, 산업담당주사”로, “지서장,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장”을 “파출소장, 농업협동조합장”으로 한다

○ 제4조 (보은군자랑스러운군민대상에관한조례)

제12조 제2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주사”로 한다.

3. 근거법령 :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
보은군직제개편(1998.9.26, 보은군조례 제1548호)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4989호)

4. 사전 입법예고 결과 : 해당없음

첨 부 : 1.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기타 첨부자료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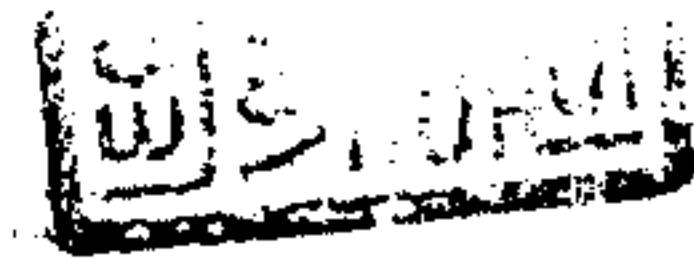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등중개정조례(안)

제1조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 개정)

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중 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1호중 “6월이상”을 “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0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2조 (보은군사무위임조례의 개정)

보은군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별표1(권한위임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2조 제2항중 “별표2(온라인민원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조 (보은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의 개정)

보은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3항중 “부읍면장, 총무계장, 새마을계장, 산업계장”을 “총무담당주사, 산업담당주사”로 하고, “지서장, 농업협동조합단위조합장”을 “파출소장, 농업협동조합장”으로 한다.

제4조 (보은군자랑스런군민대상에관한조례의 개정)

보은군자랑스런군민대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2항중 “내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서무계장”을 “서무담당주사”로 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에, 1999년 12월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30일에, 2000년 6월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30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 ③(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31일에 종료된다.
- ④(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의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9조 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제1조(보은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의개정)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생략)	제8조(근무상한연령)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삭제>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 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삭제>
제9조(직권면직)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4.(생략)	제9조(직권면직)----- ----- ----- 1.----보은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 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 기간이상----- 2.~4.(현행과 같음)
제10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한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1~2(생략)	1~2(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10조의2(휴직기간) 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 신 설 >	제10조의3(휴직의 효력) ①휴직중인 별 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유 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 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임 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 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 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다.
제3조(보은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	제3조(보은군읍면새마을추진협의회조례의개정)
제3조(구성)	제3조(구성)
①~②(생략)	①~②(현행과 같음)
③ 부읍면장, 총무계장, 새마을계장 산업계장, 사회계장은 당연직 위원이 그 밖의 위원은 지서장, 농업협동조 합장, 초.중.고등학교장, 평화통일자 문위원, 새마을부녀회장, 관내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 서 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③총무담당주사, 산업담당주사--- ----- --파출소장,농업협동조합장----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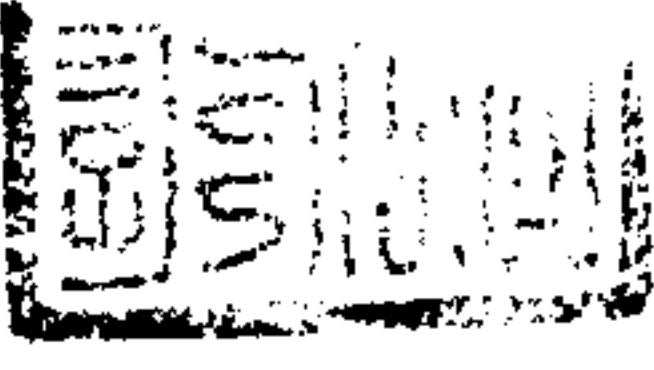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4조(보은군자랑스런군민군민대상에관한조례) 제12조 ①<생략> ②간사는 <u>내무과장</u>이 되고 서기는 <u>서무계장</u>이 된다.	제4조(보은군자랑스런군민군민대상에관한조례의개정) 제12조 ①<현행과 같음> ②----<u>자치행정과장</u>----- <u>서무담당주사</u>가 된다.

(별표1)

권 한 위 임 사 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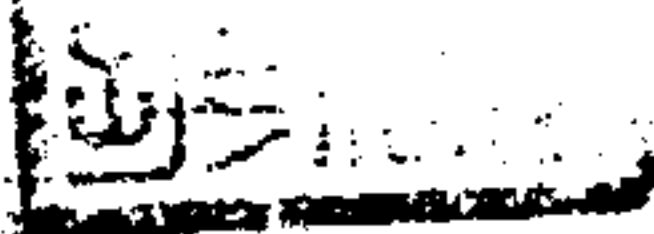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자치행정과	1. 읍면 자체내 공무원의 보직발령 2. 인장업 신고사무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2항 인장업법 제3조 및 제7조
재 무 과	1. 국세징수 위탁에 관한 사항 2. 가옥대장 정리 3. 비과세 증명 4. 지방세 완납증명 5. 징수유예 신청 6. 납기연장 신청 7. 납세관리인 설정 8. 개간농지세 면세신청 9. 농지세 감면신청 10.가옥신축 신고 11.지방세 5만원 미만의 결손처분 12.수입증지 판매 및 판매인 지정 13.당해읍면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 의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14.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사사무 15.불용품 매각처리 16.군유잡종재산 대부허가 17.특별징수신고 납부분 접수,정리 및 군에 통보 18. 수시분 접수,정리 및 군에 통보 19.과세자료 조사, 전산입력 및 관리 20.고지서 및 독촉장 발부 21.징수 및 체납처분 22.과오납금 환부 23.체납세 징수	교육세법 제10조,농어촌특별세법 제8조 보은군세조례 제27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21조 지방세법시행령 제30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 지방세법 제37조 제3항 지방세법 제201조 지방세법 제220조 보은군세조례 제23조 지방세법시행령 제14조 보은군수입증지조례 제7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의2 보은군재무회계규칙 제160조 지방재정법 제63조 보은군세조례 제6조 ” ” ” ” ” ”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사회경제과	1. 난민정착용 농우관리 2. 의료보호증 재사용 관리 3.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4. 매,화장 증명 5. 개장신고 6. 매,화장 신고 7. 이륜자동차 등록(신규,말소,이전) 8. 이륜자동차 신고용 증명 9. 정기시장 관리운영 10. 정기시장 관리인의 지정 및 취소 11. 사용 허가 12. 사용자 신고 13. 허가취소 등 14. 사용료 징수 15. 사용료의 감면	농우관리요령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의료보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8조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동법 제5조 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1조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동법시행규칙 제127조 내지 제137조의6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보은군정기시장관리및사 용조례 제21조 ” ” ” ” ” ”
환경보호과	1. 쓰레기 시설의 관리운영 2. 공중변소 관리 3. 분뇨정화조 청소지도 4. 청소업무 관리 5. 정화조설치 신고 및 준공검사(신고 대상 건축물의 정화조에 한함) 6. 개인급수전 설치허가 7. 수도사용료 부과징수 및 결정 8. 급수공사 및 기타수입 부과징수결정	폐기물관리법 제4조 제1항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 에관한법률 제16조 동법 제14조 제2항 폐기물관리법 제4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 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제6조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제49조 보은군세부과징수규칙 제3조

실 과 명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환경보호과	9. 신고 10. 급수중지와 폐전 11. 업종의 구분조정 결정 12. 요금의 조정 13.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14. 징계처분 15. 누수의 방지 및 책임 16. 과태료 징수와 행정처분 17. 급수장치의 철거 18. 이의신청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제20조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제26조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제29조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제30조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제41조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제43조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제44조의2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제45조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제46조 보은군수도급수조례 제48조
농 정 과	1. 농지전용 신고 2. 종묘장 신고 3. 자가도살 신고 	농지법 제37조 종묘관리법 제13조 축산물위생처리법시행규칙 제8조
문화관광산림과	1. 공연신고 2. 산림외 임산물의 반출허가 확인 증 발급 및 극인타기 3. 공기총을 사용한 유해조수 포획 허가 (단 참새에 한함) 4. 입산 신고	공연법 제14조 산림법 제92조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2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 산림법 제98조
건 설 과	1. 도선장 관리	보은군도선운영조례

(별표2)

온 라 인 민 원 사 무

실 과 명	민 원 사 무 명	근 거 법 령
종합민원실	1. 도시계획확인원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시행령 제20조, 민원행정쇄신지침
자치행정과	1. 경력증명서	"
	2. 재직증명서	"
	3. 퇴직증명서	"
재 무 과	1.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예치)증명	"
	2. 물품공급 거래실적 증명	"
	3. 납품실적 증명	"
	4. 징수유예 증명 	"
사회경제과	1.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증명	"
	2. 공장등록 증명	"
	3. 공장생산실적 증명	"
환경보호과	1. 상수도공사 대행업자 증명	"
문화관광산림과	1. 인쇄소(시설등록) 증명	"
건 설 과	1. 환지에정지 증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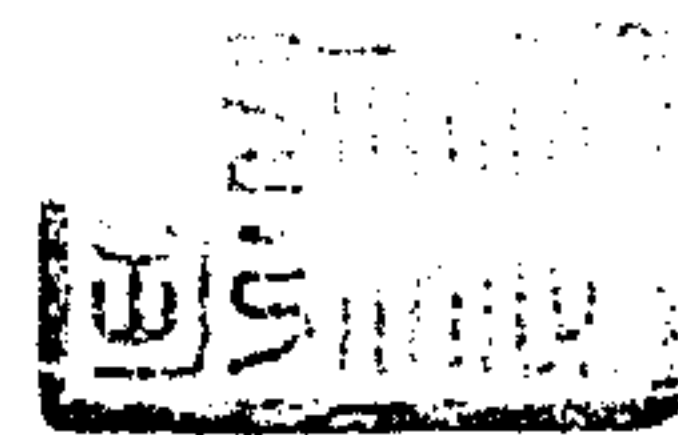
보은군의회 의결을 얻어 개정한 보은군행정기구조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보 은 군 수 김 동 현

1998년 9 월 26 일

보은군조례 제 1548 호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보은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1조 내지 제107조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보은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행정기관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장, 과장, 담당관의 직급 등】 ①군본청 및 직속기관의 실장·과장·담당관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의 직급, 사업소의 장의 직급, 하급행정기관의 장인 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 청

제3조 【실·과의 설치】 ①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사회경제과, 환경보호과, 농정과, 문화관광산림과, 건설과를 둔다.

②실·과의 분장사무의 대강은 다음과 같다.

1. 기획감사실장

- 가. 군정 주요업무추진 및 심사평가
- 나. 광역행정 및 시군행정(협)운영
- 다. 각종 지시사항·공약사업 관리
- 라. 군의회와 관련한 집행기관의 업무총괄
- 마. 예산편성 및 집행의 지도 및 관리
- 바.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수립 시행
- 사. 지방채, 기채, 일시차입, 채무관리
- 아. 예비비 관리 및 풀보조금 관리
- 자. 상급기관 수감 및 자체감사 실시 및 처분
- 차. 공무원비위예방 및 조사처분
- 타. 공직자재산등록 관리
- 카. 법제·소송업무 및 법령집 관리
- 파. 중요문서 및 업무심사
- 하. 각종 위원회 관리 및 운영
- 거. 행정자료실 운영
- 너. 통계조사 분석 관리
- 더. 공보계획수립 및 추진
- 러. 군정개몽 및 선전보도
- 미. 인문공보자료 수집·편찬
- 비. 군정주요시책 등 사진기록물 관리



심고 가꾼 100년충북 화합으로

충 청 북

위장도착수번호	17513
도월 22일	1202

우(360-765)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 전화 220-2217/ FAX 2219
 총무과 과장 신기철(2210) 인사담당 유해영(2288) 담당자 김기태(2217)

문서번호 총무12100-1356

시행일자 1998. 9. 22

(경 유)

수 신 더(01~12)

참 조 총무(내무)과장

선결	과장	26377	전체·공관	계장	정리
집	일자	98.9.23			
수	번호	2490			
처리과	내무과				
담당자	전수근			계	정리

제 목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통보

1. 행정자치부 운영 12100-451(98.9.17)호의 이첩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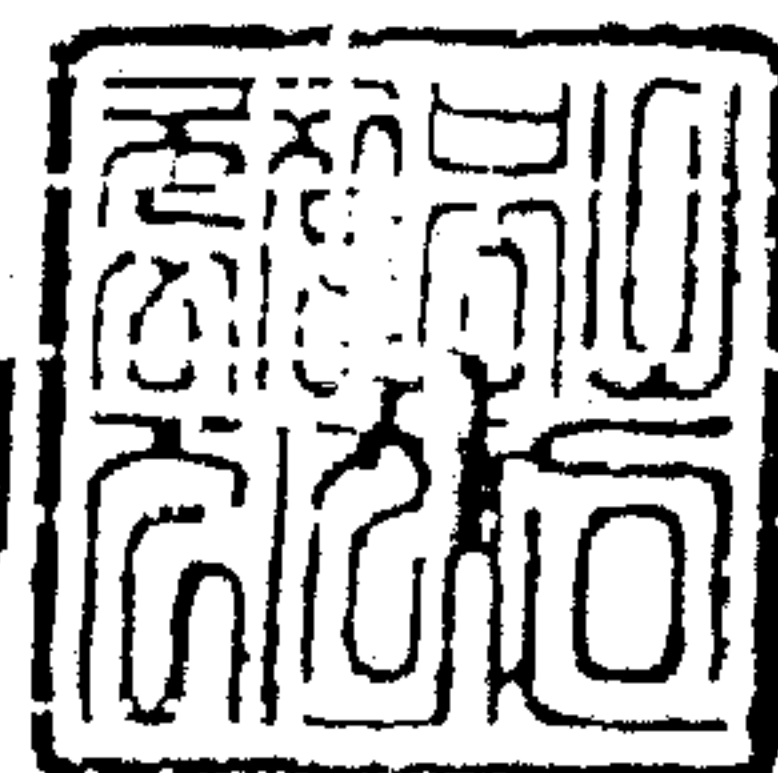
[인쇄]

2. 지방자치단체 인력의 신진대사를 촉진하기 위하여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당해 공무원의 휴가기간까지로 하며,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가급적 '98. 9월중으로 개정공포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3. 이 표준안에 의한 조례개정내용의 공포예정보고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1부 끝.

충 청 북 도 지



전경 총무과장 신 기 철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표준안

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1호중 “6월이상”을 “○○광역시(*특별시·도·시·군·자치구) 지방
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으로
한다.

제11조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하
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

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 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 보
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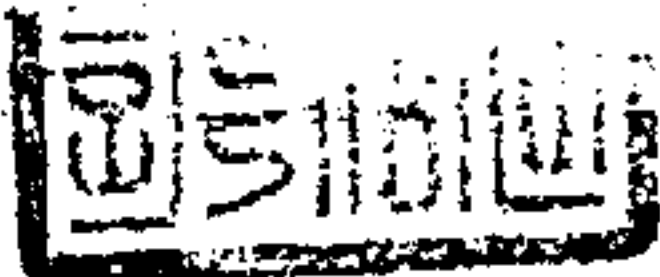
② 제1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 소
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용권자
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낭연복직되며, 복직일
전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본다.

부 칙

-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② (근무상한연령 단축에 관한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별정직공무원중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중개정법률(1998. 9.19, 법률 제5568호) 개정전의 제6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일반직공무원 정년에 준한 근무상한연령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1998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와 1999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각각 해당일자
에, 1999년 12월 31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6월 30일에, 2000년 6월 30일에 해당되는 자는 1999년 9월 30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 ③ (근무상한연령 연장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제8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상한연령을 연장받아 재직중인 자의 근무상한연령 연장기간은 1998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
- ④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직권면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신체·정신상의 장애(공무상 질병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이유로 직권면직 예정일자를 정하여 통보한 자에 대하여는 제10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생 략) ③ 제1항의 근무상한연령은 임용권 자가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신청에 의하여 인력수급사정, 당해 별정직 공무원이 담당하는 직무의 특수성, 당해 별정직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한연령 연장신청기간·절차 및 신청구비서류 등에 관하여는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연장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근무상한연령) ①~②(현행과 같음) ③ <삭 제>  ④ <삭 제>
제10조(직권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6월이상 근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제10조(직권면직) ----- ----- ----- ----- 1. ----- ○○광역시 (*특별시·도·시·군·자치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7조 내지 제24조의

현 행	개 정 안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u>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u> 1. ~ 2. (생략) <u><신 설></u> <u><신 설></u>	<u>규정에 의한 휴가기간이상</u> ----- ----- ----- 2. ~ 4. (현행과 같음) 제11조(휴직)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이 <u>다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다음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u> 1. ~ 2. (현행과 같음) <u>제11조의2(휴직기간) 제11조제1호의</u> <u>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복무기간</u> <u>이 종료된 때 까지로 한다.</u> ” <u>제11조의3(휴직의 효력) ① 휴직중인</u> <u>별정직공무원은 공무원의 신분은</u> <u>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u> <u>② 제11조제1호의</u> <u>규정에 의하여</u> <u>휴직한 별정직공무원은 그 사유가</u> <u>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u> <u>자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임</u> <u>용권자는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u> <u>야 한다.</u>

현 행	개 정 안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귀신 고를 한 때에는 당언복직되나, 복 직일 전일까지도 휴직기간으로 본 다.

